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98)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전재수 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3

Ⅰ. 개요

1.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9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 17.

(3) 회 부 일 : 2025. 1.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

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제1호)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현행과 같음)
-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초등학생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전재수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초등학생의 학원(음악, 미술, 무용등 예능학원 포함)에 지급한 교육비(윤준병의원안)
○ 세액공제율: 15%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한도 - 대학생: 연 900만원/명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명	○ 공제한도 확대 - 대학생: 연 1,000만원/명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500만원/명 (전재수의원안,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시행일 : 2025.1.1.(전재수의원안) 공포 후 3개월 (윤준병의원안) 공포 후 6개월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전재수의원안 2024. 11. 4. 제출(의안번호 5195), 윤준병의원안 2024.12.31.(의안번호 7140), 이용선의원안 2025. 1. 17. 제출(의안번호 7598), 이수진의원안 2025. 1. 21. 제출(의안번호 7657)

□ 4건의 개정안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만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재수·이용선·이수진의원안은 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전체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윤준병의원안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전체 학원(음악, 미술,무용등 예능학원을 포함)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② (공제한도 상향) 전재수·윤준병·이수진의원안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이용선·이수진의원안은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 평생교육

시설,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

1)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18년 64.3만원[2]에서 2021년 72.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18년 51.1%, 2021년 44.0%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18년 (비중)	2.1 (3.3)	11.2 (17.4)	21.7 (33.7)	2.2 (3.4)	28.3 (44.0)	64.3 (100.0)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둘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2)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인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50.3%,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이 11.5%에 불과[3]한 상황에서, 하교 이후의 자녀돌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초등학생 자녀를 체육시설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체학생의 예체능 및 취미,교양을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7% 상승하여,[4] 지원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므로 해당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 중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이

3)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5.

4)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통계청, 2025.3.

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공교육비의 비중보다 크고 2023년 대비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 참여시간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공제한도의 확대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영유아	7.1	0.1	8.9	6.1	38.3	60.6
초등학생	-	2.7	42.7	2.1	31.1	78.5
중고등학생	-	4.6	50.6	-	36.6	91.9
대학생 이상	-	28.0	2.8	-	42.8	73.6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및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비교]

구 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전 체	27.1조원	29.2조원	78.5%	80.0%	7.3시간	7.6시간
초등학교	12.4조원	13.2조원	86.0%	87.7%	7.5시간	7.8시간
중학교	7.2조원	7.8조원	75.4%	78.0%	7.4시간	7.8시간
고등학교	7.5조원	8.1조원	66.4%	67.3%	6.7시간	6.9시간

자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4. 3.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자녀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60%	1.6	3.2	11.6	0.5	29.2	46.1
60%~80%	3.2	3.0	16.6	0.2	29.8	52.8
80%~100%	2.8	4.9	23.1	0.8	34.2	65.8
100%~120%	3.2	5.9	25.8	2.8	34.2	71.9
120%~140%	2.7	6.2	29.2	3.5	35.7	77.3
140%~160%	2.8	6.8	30.6	6.4	36.2	82.8
160%~	2.9	9.9	44.4	6.6	6.6	70.4

*가구소득은 2021년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원)이 100%에 해당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5]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이 되지 않음.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규모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5)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명(33%)임.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최소 1조 5,363억원에서 최대 2조 4,92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6년～2030년)]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누적	연평균
전재수 의원안	-5,684	-5,361	-4,985	-4,605	-4,284	-24,920	-4,984
윤준병 의원안	-	-5,330	-4,953	-4,571	-4,249	-23,079	-4,616
이용선 의원안	-3,572	-3,307	-3,039	-2,816	-2,629	-15,363	-3,073
이수진 의원안	-5,459	-5,080	-4,699	-4,380	-4,114	-23,731	-4,7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이수진의원안과 이용선의원안은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생의 등록금이 점진적인 상향추세임을 고려할 때 그 공제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있음. 2024년 대학 등록금은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물가 상승등 대학의 재정부담 증가로,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26개교의 등록금이 인상되었음.[6] 이로 인해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만 7,300원 수준임.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대학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22년 명목 대학등록

6)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2024.4.30

금은 2008년 대비 1.0% 인상된 수준임.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 6천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임.[7] 이는 초·중등 사교육비 지출 상승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고소득층의 비율이 43.9%, 저소득층 29.2%, 중외소득계층은 26.9%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근로자는 그 혜택을 수혜받지 못하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7) “정보 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1.12.